

 <p>거창군 Geochang County</p> <p>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p>	<h1 style="font-size: 48px; margin: 0;">공 보</h1> <p style="font-size: 24px; margin: 0;">제827호 2021. 10. 20(수)</p>	
---	---	---

선 결	기관의 장

고 시

제2021-143호 거창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주차장시설)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2

제2021-149호 도로명주소 고시 4

공 고

제2021-1471호 「거창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위탁운영단체 공개모집 공고 6

제2021-1487호 공인(전자이미지관인 포함) 등록 공고 40

제2021-1475호 거창군관리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안) 열람 공고 41

제2021-1481호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43

제2021-1492호 공 시 송 달 공 고 51

제2021-1493호 공 시 송 달 공 고 53

회 략									
------------	--	--	--	--	--	--	--	--	--

발 행 : 거창군 편 집 : 기획예산담당관 (055-940-3043, 행정 3043)

※ 거창군 공보는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거창군 고시 제2021-143호

거창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주차장시설)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주차장) 결정(변경)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21-524호, 2021. 10. 14.)되어,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14일

거창군수

1. 거창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적(m ²)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804,144,882	-	804,144,882	100.00	-
주거지역	소계	4,873,912	-	4,873,912	0.60	-
	제1종전용주거지역	-	-	-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1,462,455	-	1,462,455	0.18	-
	제2종일반주거지역	3,121,738	-	3,121,738	0.39	-
	제3종일반주거지역	196,095	-	196,095	0.02	-
	준주거지역	93,624	-	93,624	0.01	-
상업지역	소계	347,740	-	347,740	0.04	-
	중심상업지역	-	-	-	-	-
	일반상업지역	347,740	-	347,740	0.04	-
	근린상업지역	-	-	-	-	-
	유통상업지역	-	-	-	-	-
공업지역	소계	1,271,445	-	1,271,445	0.16	-
	전용공업지역	-	-	-	-	-
	일반공업지역	1,243,003	-	1,243,003	0.15	-
	준공업지역	28,442	-	28,442	0.01	-
녹지지역	소계	25,413,367	-	25,413,367	3.17	-
	보전녹지지역	1,654,760	-	1,654,760	0.21	-
	생산녹지지역	7,711,971	-	7,711,971	0.96	-
	자연녹지지역	16,046,636	-	16,046,636	2.00	-
관리지역	소계	262,134,279	증) 2,671	262,136,950	32.60	-
	보전관리지역	171,787,051	감) 2	171,787,049	21.36	-
	생산관리지역	8,261,516	-	8,261,516	1.03	-
	계획관리지역	82,085,712	증) 2,673	82,088,385	10.21	-
농림지역		469,399,844	감) 2,671	469,397,173	58.37	-
자연환경보전지역		40,704,295	-	40,704,295	5.06	-
미지정		-	-	-	-	-

나.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 적 (m ²)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갈계리 1488-2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2,671	10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창군 북상면 지역주민들의 마을순환버스 이용 서비스 개선을 위한 환승 및 회차공간 확보와 북상면소재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시설의 용도 및 목적에 부합하는 용도지역 변경코자 함
-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갈계리 1433-2번지	보전관리 지역	계획관리 지역	2		

2. 군계획시설 결정조서 및 사유서

가. 주차장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m ²)			최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22	주차장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갈계리 1488-2번지 일원	-	2,673	2,673		

나. 결정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22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장시설 신설 - 면적 : 2,673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창군 북상면 지역주민들의 마을순환버스 이용 서비스 개선을 위한 환승 및 회차공간 확보와 북상면소재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조성을 위해 군관리계획(주차장시설) 결정(신설)

3. 관계 도면 : 실음생략

4. 관계 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가능]는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055-940-358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10. 20.

거창군수

○ 도로명주소 고시대상

- 건물번호 부여 :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넘터1길 59-17 등 3건
- 건물번호 변경 :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황마로 1026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 (변경·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055-940-3313)로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부여.변경.폐지) 고시 조서

일련 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 시 일		도로명부여사유	이동사유	비고
			도로명	도로명주소			
1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완대리 885-1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넘터1길 59-17	20211020	20090401	모동으로 넘어가는 갯길에 위치하여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첫번째 도로	건물번호 부여	
2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황마로 1028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황마로 1026	20211020	20090702	옛 노선명(황곡+마리면간) 활용	건물번호 변경	
3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일부리 1361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온천길 37	20211020	20090401	온천지구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도로	건물번호 부여	
4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무촌리 1717-2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수남로 1801-94	20211020	20090702	행정구역명(수동면+남상 면) 활용	건물번호 부여	

「거창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위탁운영단체 공개모집 공고

「거창군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거창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등 제 규정에 따라 「거창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를 위탁 운영할 청소년 단체(법인)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8일

거 창 군 수

1. 위탁 개요

가. 위탁대상 : 거창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나. 위탁범위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유지관리 등

운영업무(예)	주요내용(예)
프로그램 지원*	(토요체험활동) 관내·외 관광지 또는 명소 탐방 및 체험활동 (전문체험활동) 볼링 등 스포츠, 과학 및 공예 등 프로그램 (교과학습활동) 영어 및 수학 학습(일정 시수 이상 운영) (자기계발활동) 청소년 안전 및 인성교육, 선거 및 통일교육 등 (특별사업) 긴급돌봄, 생태농업체험,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가족과 함께 하는 캠프) 가족과 집에서 키트 만들기, 요리 만들기 등 (지역사회 참여활동) 공원 및 강변 환경정화활동, 청소년어울림마당 참여 등
급식 지원	참여 청소년(40명)에게 석식 1식 지원(단체급식) / 기타 간식 지원
귀가 지원	읍·면 등·하교 차량 지원(어린이보호차량 2대 운영)
시설 관리	거창군청소년수련관 2층 4개실 - 사무실 1실(34.20㎡), 교실 2실(초등 52.45㎡, 중등 55.03㎡) 창고 1실(19.48㎡)

※ 프로그램 지원의 경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침 준수 하에 내용 변동 가능

다. 위탁기간 : 2022. 1. 1. ~ 2024. 12. 31.(3년간)

라. 위탁장소 : 거창군청소년수련관* 2층 4개실

* 소재지 : 경남 거창군 거창읍 교촌길 100-30

마. 위탁사업비 : 연 201,672천원 내외 ※ 2022년 기준(예상)

1) 사업비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지원금액	지원내용	비고
계	201,672		
기본 지원	171,272	종사자 급여, 급·간식비, 프로그램비, 차량운영비 등	국·도·군비
추가 지원	30,400	종사자 수당, 4대보험 부담금, 차량운영비 등	군비 추가

2) 국도비 확정내시, 군 보조금 심의, 군의회 승인 등의 사유에 따라 보조 금액(사업비)이 변경(가감)될 수 있음

3) 위탁에 따른 연간 지원금액은 예산범위 내 교부가능한 금액으로 함
바. 위탁조건

1) 수탁단체는 관계법규, 쌍방이 체결하는 협약 내용,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침을 성실히 준수해야 함

2) 당해연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침에 따라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인원을 모집하고 프로그램을 운영 하여야 하며, 인근 공공시설과 연계협력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 하여야 함

3) 위탁단체 소속으로 운영책임자(팀장) 1명 및 실무지도자(담임) 2명을 채용하고 채용된 인원의 4대 보험을 가입하여야 함. 팀장 및 담임의 자격은 당해연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침의 자격요건 등에 따름

4) 사업비 중 교부된 예산의 초과부분은 위탁 운영단체에서 자부담 하여야 함

- 5)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필요한 차량(11인승 이상 2대)을 보유하여야 하며(임차차량도 가능), 당해 차량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어린이통학버스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6) 모집정원(40명 : 초등 20, 중등 20)의 70% 이하(28명 이하)로 정상 운영이 어려울 경우 사업 중지 가능함
- 7) 여성가족부 방과후아카데미 사업 평가 결과 5개 등급 중 1개 등급이라도 적정운영 이상이 아닌 경우 위탁 취소가 가능함
- 8)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침(여성가족부) , 청소년기본법,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 관련규정에 따름

2. 신청자격

가.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나. 상기의 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당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8호】

-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소년단체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여성가족부 고시】

- 정관의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 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 청소년학과·교육학과 등 청소년 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청소년활동 실적이 있는 대학(학교법인을 포함한다)

3. 위탁단체 모집 및 접수

가. 공고기간 : 2021. 10. 18.(월) ~ 10. 31.(일) / 2주간

나. 접수기간 : 2021. 11. 1.(월) ~ 11. 2.(화) / 2일간

1) 접수가능시간 : 10:00 ~ 18:00

2) 점심시간 접수 제외 : 12:00 ~ 13:00

다. 접수방법 : 방문 접수 (우편 신청 및 온라인 등 불가)

라. 접수장소 : 거창군청소년수련관 2층 인구교육과 사무실

1) 소 재 지 : 경남 거창군 거창읍 교촌길 100-30

2) 담 당 자 : 인구교육과 청소년담당(☎055-940-8702)

4. 제출서류

가. 사업계획서 제본 책자 9부(원본 1부, 사본 8부)

- 1) 표지, 신청서, 단체현황, 경영상태, 운영실적, 주요사업계획, 전담인력 보유현황, 기자재 보유현황, 재정운영 및 투자계획, 지역사회 공신력 제고 등 방안 포함(서식1~서식10 참조하여 순서대로 편철)
- 2) A4 세로방향 및 좌철, 무선(접착) 제본하되, 표지는 백색아트지·무광택(글자 검정), 본문은 백상지, 단면인쇄, 색채사용 허용
- 3) 목차 또는 간지를 작성할 수 있으며 표지, 목차, 간지는 쪽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본문은 ‘아래쪽 중앙’에 쪽수를 기재할 것

나. 기타 증빙자료 각 1부

- 1) 법인허가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법인인 경우)
- 2) 단체등록증 사본 1부(단체인 경우)
- 3) 서약서 1부 (서식11)
- 4) 법인(단체) 사용 인감계 1부 (서식12)
- 5) 전담인력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원본 등 증빙자료 각 1부
- 6) 유의사항

가) A4 세로방향으로 하되 1~5)의 순서대로 편철 후 집계(더블클립)로 왼쪽 상단부 고정 제출(스테이플러 등으로 고정불가)

- 나) 증빙자료는 사본일 경우 우측 하단에 원본대조필 및 단체직인 날인
- 다) 1)~2)의 법인 또는 단체등록증의 경우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임을 증빙할 수 있도록 주된 사업내용 등에 청소년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라)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전담인력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등은 2021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침(여성가족부) 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한도 내에서 제출 가능(추가 제출도 가능)

다. 사업계획서 전자파일(한글 또는 PDF) 1부

- 1) 접수 마감기간까지 담당자 이메일(koowoo777@korea.kr)로 송부
- 2) 파일제목은 ‘거창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사업계획서(단체명)’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것

5. 심사 및 선정방법

- 가. 제출된 서류를 담당부서에서 1차 검토하여 적격자로 판단되면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접수단체를 심사함
- 나. 민간위탁심의위원회는 군 소속 공무원, 민간위탁 대상사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6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담당부서에서 구성함
- 다. 민간위탁심의위원회는 2021년 11월 중 개최될 예정으로 신청단체는 심사당일 위원회에 출석하여 운영계획을 발표(PPT 방식)하고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응답해야 함(대면심사)
 - ※ 일시·장소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신청단체에 한하여 추후 별도 안내
- 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는 신청단체의 운영계획 발표와 사업계획서 및 기타서류를 참고하여 위원별 채점하며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위원들의 점수의 합을 산술평균하여 최종점수를 산출함(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산정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마. 민간위탁심의 결과, 평균 70점 이상을 받은 단체 중에서 최고점 단체를 1순위 단체로 결정하며, 1순위 단체가 자격상실, 위·수탁 협약 포기

등으로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순위 단체와 협약을 진행할 수 있음 (세부심사기준 붙임 참조)

바. 심사결과 모든 단체가 평균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부적격으로 처리하여 단체모집을 재공고함

(재공고 기간 및 기타사항은 아래 내용과 같음)

사. 최초 공개모집 시 접수된 청소년단체가 1개(단독)인 경우, 최소 7일 이상(주말 포함)의 기간을 두고 재공고를 시행하며, 재공고 기간에 접수된 단체가 1개(단독)인 경우에는 해당 단체에 대하여만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서 서면심사(대면심사 아님)하되, 심사결과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탁단체로 결정함

6.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위탁 운영단체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나. 관련 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다. 수탁 운영자로 선정된 법인(단체)는 지정된 기일까지 우리 군과 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를 공증 받아야 함

라. 지정된 기일까지 위탁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위탁운영자 결정을 취소로 하며, 차 순위자와 별도 협약할 수 있음

마. 기존 시설물, 갖추어진 자산 등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에 시설 운영에 필요한 내부시설, 필요장비, 집기류 등은 수탁 단체의 부담으로 구입·운영하여야 함

바. 본 위탁운영 단체 모집은 우리 군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거창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함

사.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군의 해석에 따름

아. 문의처 : 거창군청 인구교육과 청소년담당(☎055-940-8702)

붙임 1. 세부심사기준 1부.

2. 신청서류 서식 1부. 끝.

붙임1

세부심사기준

- 배점기준 : 정량평가(10점) + 정성평가(90점) = 100점
- 심사방식 : 정량평가는 담당부서에서 확인·평가하고 정성평가는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평가하여 합산함

심사항목	심사기준	배점	비고
수탁기관의 적격성 (20점)	1. 법인(단체) 유형 및 설립목적, 운영대표자 적격성 ① 우수(10~9) ② 보통(8~6) ③ 미흡(5~0)	10	정성
	2. 법인(단체)의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① A- 이상(10) ② B- 이상(8) ③ CCC+ 이하(5)	10	정량
사업운영의 전문성· 책임성 (60점)	3. 법인(단체)의 청소년 관련사업 전문성 (최근 3년간 청소년 관련사업 운영실적 포함) ① 우수(10~9) ② 보통(8~6) ③ 미흡(5~0)	15	정성
	4. 본 사업계획의 전문성 및 타당성, 사업 운영 강화방안 ① 우수(10~9) ② 보통(8~6) ③ 미흡(5~0)	15	정성
	5. 운영 전담인력의 전문성 ① 우수(10~9) ② 보통(8~6) ③ 미흡(5~0)	10	정성
	6. 법인(단체)의 사업관련 기자재, 설비, 차량 등 보유현황 ① 우수(10~9) ② 보통(8~6) ③ 미흡(5~0)	10	정성
	7. 재정운영 및 투자계획의 타당성 ① 우수(10~9) ② 보통(8~6) ③ 미흡(5~0)	10	정성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 조성능력 (20점)	8. 지역사회 내 공신력 제고방안 ① 우수(10~9) ② 보통(8~6) ③ 미흡(5~0)	10	정성
	9.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 및 지역사회 자원동원 방안 ① 우수(10~9) ② 보통(8~6) ③ 미흡(5~0)	10	정성
계		100	

○ [정량평가 지표] 법인(단체)의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기준

- 공고 종료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등급구간에 따라 평가함
- 신용평가자료 미제출 업체 또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업체는 최저점 (5점)으로 평가함

평가항목	배점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확인방법
경영상태	10	AAA, AA+, AA0, AA-, A+, A0, A-,	10	기업신용평가 등급확인서 제출
		BBB+, BBB0, BBB-, BB+, BB0, BB- B+, B0, B-	8	
		CCC+ 이하	5	

○ 신용평가등급별 정의(참고용)

신용평가등급	등급 정의
AAA	신용능력이 최우량급이며, 환경변화에 충분한 대처가 가능한 기업
AA	신용능력이 우량하며, 환경변화에 적절한 대처가 가능한 기업
A	신용능력이 양호하며, 환경변화에 대한 대처능력이 제한적인 기업
BBB	신용능력이 양호하나,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라 거래안정성 저하가능성이 있는 기업
BB	신용능력이 보통이며,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 시에는 거래안정성 저하가 우려되는 기업
B	신용능력이 보통이며,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 시에는 거래안정성 저하가능성이 높은 기업
CCC	신용능력이 보통 이하이며, 거래안정성 저하가 예상되어 주의를 요하는 기업
CC	신용능력이 매우 낮으며, 거래의 안정성이 낮은 기업
C	신용능력이 최하위 수준이며, 거래위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업
D	현재 신용위험이 실제 발생하였거나, 신용위험에 준하는 상태에 처해 있는 기업

**거창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위탁운영단체 공개모집
[신청서류 서식 목록]**

[서식1] 사업계획서 표지

[서식2] 거창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위탁 신청서

[서식3] 위탁 법인(단체)현황

[서식4] 위탁 법인(단체) 경영상태

[서식5] 법인(단체)의 청소년 관련사업 운영실적

[서식6]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주요사업계획

[서식7]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전담인력 보유현황

[서식8]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기자재, 설비 보유현황

[서식9]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재정운영 및 투자계획

[서식10] 지역사회 공신력 제고 및 협력관계 구축방안

[서식11] 서약서

[서식12] 법인(단체) 사용 인감계

[서식1]

접수번호

2021-

↗ 글자크기 : 21, 장평 100, 글자체 : HY헤드라인

『거창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사업 계획서

↳ 글자크기 : 35, 장평 100, 글자체 : HY헤드라인

2021. 11.

단 체 로 고
이 미 지 삽 입

법인(단체)명

↳ 글자크기 : 24, 글자체 : HY견고딕

[서식2]

거창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수탁 신청서

사 무 명	거창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신 청 인	법 인 (단체)명		법인(단체) 등록번호	
	법인(단체) 유 형		설립일자	
	소 재 지		전화번호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경 영 상 태	신용평가등급 : 0등급			
청소년관련 사업 실적	최근 3년간 주요실적만 간략히 기재(4줄 이내)			
전담인력 (0 명)	팀장 : 성명(주요자격증 / 관련경력기간 간략 기재) 담임 : 성명(주요자격증 / 관련경력기간 간략 기재) 담임 : 성명(주요자격증 / 관련경력기간 간략 기재)			
주요설비	본 사업을 위해 갖춘 주요 기자재, 설비 간략히 작성(4줄 이내)			
운 영 예 산	0000천원 * 본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계획 예산			

거창군에서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거창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2021년 11월 일

[신청단체]

(인)

거창군수 귀하

[서식3]

수탁 법인(단체) 현황				
법인(단체)명				
설립목적				
설립일자				
주 소				
전화번호				
E-mail			팩스번호	
대 표 자	성 명			
	주 소			
	주요경력	○ ○ ○ ○	사 진	이미지파일 삽입
	소지자격			
			생년월일	
			연락처	
단체 주요연혁 및 활동사항	○ ○ ○ ○ ○ ○ ○			

[서식4]

수탁 법인(단체) 경영상태	
법인(단체)명	
신용평가등급	0등급
<p><작성 유의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빈 칸에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사본 이미지(선명도가 높아야함) 첨부할 것2. 우측 하단부 원본대조필 및 단체 직인 날인할 것	

[서식5]

법인(단체)의 청소년 관련사업 운영실적	
법인(단체)명	
실적기간	2019. 1. ~ 2021. 10. 31. (최근 3년간)
단체 주요 활동내역	○ ○ ○ ○ ○ ○
단체 주요 수상실적	○ ○ ○ ○ ○ ○

<작성 유의사항>

1. 주요 활동내역 및 수상실적을 간략하게 작성(기간-내용 순으로 작성) / 필요시 사업비, (사업비)지원기관 등도 자유롭게 기재 가능
2.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및 기타 청소년사업에 대하여 작성
3. 필요 시 다음 장부터 별지를 작성하여 사진 및 설명내용을 기재할 수 있음

[서식6]

거창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주요사업계획

1. 사업개요

- 가. 사업목적(비전 등)
- 나. 추진배경 및 경과

2. 사업추진계획

- 프로그램 및 급식, 귀가차량 지원 등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을 구분하여 소개

3. 운영방안

- 가. 대상자(참여청소년) 선정 및 모집
- 나. 전담인력 구성 및 운영방안
- 다. 프로그램 등 운영시간 및 운영과정 등(코로나19, 자연재난 등의 경우 긴급돌봄방안, 안전관리 방안 등 포함)

4. 기대효과

<작성 유의사항>

1. 상기 내용(목록)을 포함하여 자유롭게 작성(가감 가능)
2. 글씨크기 최소 14포인트 이상 유지
3. 글씨체는 한컴바탕을 기본으로 하되, 일부 글씨체는 강조를 위하여 다른 글씨체 사용가능
4. 2022년 기준으로 작성하되, 필요시 위탁기간 종료기간인 2024년까지의 장기계획도 서술 가능
5. 사업추진계획과 운영방안을 혼재하여 작성하여도 되며, 필요 시 사업추진계획을 시간순서에 따라(예 : 1월에는 어떤 프로그램, 2월에는 어떤 프로그램...) 나열 가능

[서식7]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전담인력 보유현황

(2021. 10월말 기준)

직급	성명	생년월일	담당업무	관련 자격증 (취득일자 : 연월)	관련경력 (기간 : 연월)
팀장		00.00.00.	○	○ 청소년지도사1급 (00.00.) ○ ○	○ 000청소년사업 (0년0월) ○ ○
담임			○	○ ○ ○	○ ○ ○
담임			○	○ ○ ○	○ ○ ○

<작성 시 유의사항>

1. 여성가족부 2021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침 p.17의 팀장, 담임의 자격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자격증 및 경력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할 것
2.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의 증빙자료를 별도로 제출할 것(여성가족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침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한도 내에서 제출하면 되며, 그 이상의 추가자료도 제출은 가능함)
3. 자격증 등 사본의 경우에는 우측 하단에 원본대조필(단체 직인) 필수

[서식8]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기자재, 설비 보유현황				
법인(단체)명				
주요 장비 보유현황	장비명	수량	주요용도	

<작성 시 유의사항>

1.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주요 장비에 대해 기재할 것
2. 주요용도에는 본 사업 추진 시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간략히 기재할 것
3. 작성칸은 장비현황에 따라 작성자가 가감 가능

[서식9]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재정운영 및 투자계획

1. 사업비 총괄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지원금액	비 고
사 업 비		인건비 : 000천원(00%) 운영비 : 000천원(00%)

2.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비목	내역	금액	산출내역
인건비	종사자 급여		팀장 0원×12개월 담임 0원×12개월
운영비	귀가차량 운영		차량 2대×0원×12개월

<작성 시 유의사항>

1. 사업비 총괄내역은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으로 작성
2. 사업비는 위탁 공고문 사업비 내역을 참조하여 작성 가능하며, 국도군비 및 군비 추가 지원분 반영하여 작성할 것
3. 산출내역은 [차량 2대×0원×12개월]과 같이 간단명료하게 작성

지역사회 공신력 제고 및 협력관계 구축방안

1. 지역사회 공신력 제고방안

- 가. 지역사회 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가 선한 영향력이나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 내용 또는 사업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홍보방안 등을 자유롭게 작성

2.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 방안

- 가. 지역 내 청소년시설 등과의 협력관계 구축 방안
- 나. 지역사회 다른 단체 또는 인력 등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방안(다른 단체의 인력 지원, 봉사 등 내용)을 자유롭게 작성

<작성 시 유의사항>

- 1. 글자크기는 14포인트 이상, 글씨체는 한컴바탕체를 유지하되 내용의 강조 등을 위하여 글자크기와 글씨체를 일부 변경할 수 있음

[서식11]

서 약 서

○ 법인(단체)명 :

○ 대표자명 :

상기 법인(단체)는 거창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 위탁 운영을 신청함에 있어 구비서류 및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공고문을 충분히 읽고 숙지하였음을 서약합니다. 만일 신청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 되더라도 무효가 됨을 인지하고 있으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021년 11월 일

법인(단체)명 :

주 소 :

법인(단체)대표자 성명 : (인)

거창군수 귀하

[서식12]

법인(단체) 사용 인감계

사 용 인 감



위 인감은 거창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 위탁 운영 신청 시부터
협약 체결 시까지 거창군에 제출하는 제반서류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사용
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11월 일

법인(단체)명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거창군수 귀하

**거창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위탁운영단체 공개모집
[신청서류 서식 목록]**

[서식1] 사업계획서 표지

[서식2] 거창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수탁 신청서

[서식3] 수탁 법인(단체)현황

[서식4] 수탁 법인(단체) 경영상태

[서식5] 법인(단체)의 청소년 관련사업 운영실적

[서식6]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주요사업계획

[서식7]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전담인력 보유현황

[서식8]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기자재, 설비 보유현황

[서식9]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재정운영 및 투자계획

[서식10] 지역사회 공신력 제고 및 협력관계 구축방안

[서식11] 서약서

[서식12] 법인(단체) 사용 인감계

[서식1]

접수번호

2021-

↗ 글자크기 : 21, 장평 100, 글자체 : HY헤드라인

『거창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사업 계획서

↳ 글자크기 : 35, 장평 100, 글자체 : HY헤드라인

2021. 11.

단 체 로 고
이 미 지 삽 입

법인(단체)명

↳ 글자크기 : 24, 글자체 : HY견고딕

[서식2]

거창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수탁 신청서				
사 무 명	거창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신 청 인	법 인 (단체)명		법인(단체) 등록번호	
	법인(단체) 유 형		설립일자	
	소 재 지		전화번호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경 영 상 태	신용평가등급 : 0등급			
청소년관련 사업 실적	최근 3년간 주요실적만 간략히 기재(4줄 이내)			
전담인력 (0 명)	팀장 : 성명(주요자격증 / 관련경력기간 간략 기재) 담임 : 성명(주요자격증 / 관련경력기간 간략 기재) 담임 : 성명(주요자격증 / 관련경력기간 간략 기재)			
주요설비	본 사업을 위해 갖춘 주요 기자재, 설비 간략히 작성(4줄 이내)			
운 영 예 산	0000천원 * 본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계획 예산			
<p>거창군에서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거창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1년 11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단체] (인)</p> <p>거창군수 귀하</p>				

[서식3]

수탁 법인(단체) 현황			
법인(단체)명			
설립목적			
설립일자			
주 소			
전화번호			
E-mail			팩스번호
대 표 자	성 명		
	주 소		
	주요경력	○ ○ ○ ○	사 진
	소지자격		
			이미지파일 삽입
			생년월일
			연락처
단체 주요연혁 및 활동사항	○ ○ ○ ○ ○ ○ ○ ○		

[서식4]

수탁 법인(단체) 경영상태	
법인(단체)명	
신용평가등급	0등급
<p><작성 유의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빈 칸에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사본 이미지(선명도가 높아야함) 첨부할 것2. 우측 하단부 원본대조필 및 단체 직인 날인할 것	

[서식5]

법인(단체)의 청소년 관련사업 운영실적	
법인(단체)명	
실적기간	2019. 1. ~ 2021. 10. 31. (최근 3년간)
단체 주요 활동내역	○ ○ ○ ○ ○ ○
단체 주요 수상실적	○ ○ ○ ○ ○ ○

<작성 유의사항>

1. 주요 활동내역 및 수상실적을 간략하게 작성(기간-내용 순으로 작성) / 필요시 사업비, (사업비)지원기관 등도 자유롭게 기재 가능
2.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및 기타 청소년사업에 대하여 작성
3. 필요 시 다음 장부터 별지를 작성하여 사진 및 설명내용을 기재할 수 있음

[서식6]

거창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주요사업계획

1. 사업개요

- 가. 사업목적(비전 등)
- 나. 추진배경 및 경과

2. 사업추진계획

- 프로그램 및 급식, 귀가차량 지원 등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을 구분하여 소개

3. 운영방안

- 가. 대상자(참여청소년) 선정 및 모집
- 나. 전담인력 구성 및 운영방안
- 다. 프로그램 등 운영시간 및 운영과정 등(코로나19, 자연재난 등의 경우 긴급돌봄방안, 안전관리 방안 등 포함)

4. 기대효과

<작성 유의사항>

1. 상기 내용(목록)을 포함하여 자유롭게 작성(가감 가능)
2. 글씨크기 최소 14포인트 이상 유지
3. 글씨체는 한컴바탕을 기본으로 하되, 일부 글씨체는 강조를 위하여 다른 글씨체 사용가능
4. 2022년 기준으로 작성하되, 필요시 위탁기간 종료기간인 2024년까지의 장기계획도 서술 가능
5. 사업추진계획과 운영방안을 혼재하여 작성하여도 되며, 필요 시 사업추진계획을 시간순서에 따라(예 : 1월에는 어떤 프로그램, 2월에는 어떤 프로그램...) 나열 가능

[서식7]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전담인력 보유현황

(2021. 10월말 기준)

직급	성명	생년월일	담당업무	관련 자격증 (취득일자 : 연월)	관련경력 (기간 : 연월)
팀장		00.00.00.	○	○ 청소년지도사1급 (00.00.) ○ ○	○ 000청소년사업 (0년0월) ○ ○
담임			○	○ ○ ○	○ ○ ○
담임			○	○ ○ ○	○ ○ ○

<작성 시 유의사항>

1. 여성가족부 2021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침 p.17의 팀장, 담임의 자격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자격증 및 경력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할 것
2.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의 증빙자료를 별도로 제출할 것(여성가족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침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한도 내에서 제출하면 되며, 그 이상의 추가자료도 제출은 가능함)
3. 자격증 등 사본의 경우에는 우측 하단에 원본대조필(단체 직인) 필수

[서식8]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기자재, 설비 보유현황				
법인(단체)명				
주요 장비 보유현황	장비명	수량	주요용도	

<작성 시 유의사항>

1.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주요 장비에 대해 기재할 것
2. 주요용도에는 본 사업 추진 시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간략히 기재할 것
3. 작성칸은 장비현황에 따라 작성자가 가감 가능

[서식9]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재정운영 및 투자계획

1. 사업비 총괄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지원금액	비 고
사 업 비		인건비 : 000천원(00%) 운영비 : 000천원(00%)

2.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비목	내역	금액	산출내역
인건비	종사자 급여		팀장 0원×12개월 담임 0원×12개월
운영비	귀가차량 운영		차량 2대×0원×12개월

<작성 시 유의사항>

1. 사업비 총괄내역은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으로 작성
2. 사업비는 위탁 공고문 사업비 내역을 참조하여 작성 가능하며, 국도군비 및 군비 추가 지원분 반영하여 작성할 것
3. 산출내역은 [차량 2대×0원×12개월]과 같이 간단명료하게 작성

지역사회 공신력 제고 및 협력관계 구축방안

1. 지역사회 공신력 제고방안

- 가. 지역사회 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가 선한 영향력이나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 내용 또는 사업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홍보방안 등을 자유롭게 작성

2.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 방안

- 가. 지역 내 청소년시설 등과의 협력관계 구축 방안
- 나. 지역사회 다른 단체 또는 인력 등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방안(다른 단체의 인력 지원, 봉사 등 내용)을 자유롭게 작성

<작성 시 유의사항>

- 1. 글자크기는 14포인트 이상, 글씨체는 한컴바탕체를 유지하되 내용의 강조 등을 위하여 글자크기와 글씨체를 일부 변경할 수 있음

[서식11]

서 약 서

○ 법인(단체)명 :

○ 대표자명 :

상기 법인(단체)는 거창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 위탁 운영을 신청함에 있어 구비서류 및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공고문을 충분히 읽고 숙지하였음을 서약합니다. 만일 신청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 되더라도 무효가 됨을 인지하고 있으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021년 11월 일

법인(단체)명 :

주 소 :

법인(단체)대표자 성명 : (인)

거창군수 귀하

[서식12]

법인(단체) 사용 인감계

사 용 인 감



위 인감은 거창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 위탁 운영 신청 시부터
협약 체결 시까지 거창군에 제출하는 제반서류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사용
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11월 일

법인(단체)명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거창군수 귀하


공인(전자이미지관인 포함) 등록 공고

「거창군 공인조례」 제6조에 따라 공인을 등록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0. 18.

거 창 군 수

1. 등록사유 : 조직개편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신규 지정
2. 등록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21. 10. 18.
3. 등록공인의 명칭 및 인영

공 인 명	규 격	인 영
거창군보건소분임재무관인	2.0cm×2.0cm	

거창군관리계획(시설 : 도로) 결정(변경)(안) 열람 공고

거창군관리계획(시설 :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9일

거 창 군 수

1. 거창군관리계획(시설 : 도로) 결정(변경) 조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1	A	10	국지 도로	140	중로 3-4	소로 2-A	일반 도로	-	-	
신설	소로	2	A	8	국지 도로	50	중로 2-17	소로 1-A	일반 도로	-	-	

■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소로 1-A호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선 신설 - 폭원 : 10m - 연장 : 140m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지내 이면도로의 개설을 통한 주민불편 해소 및 원활한 교통소통 도모를 위해 노선을 신설함
-	소로 2-A호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선 신설 - 폭원 : 8m - 연장 : 50m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지내 이면도로의 개설을 통한 주민불편 해소 및 원활한 교통소통 도모를 위해 노선을 신설함

2. 관계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
3. 열람기간 : 신문게재 익일부터 14일간
4. 의견제출 : 위의 거창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열람장소 :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055-940-35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8일
거창군수

1. 자치법규명 :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2. 개정이유
 - 농림축산식품부 거점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의 기준을 충족하여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운영을 촉진함으로써 거창군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여 군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위임조례가 아닌 자치조례임을 명확히 함(안 제1조)
 - 나.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원칙에 따라 조문 순서 등 변경(안 제2조의2, 제3조, 현행 제5조)
 - 1)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위치
 - 2) 설치운영 삭제(현행 제5조)

다. 법령 근거 인용법령 명시(안 제15조, 제20조)

1) 내용 : 운영의 위탁, 이용료

2) 근거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

라. 법령·조례 중복·재기재, 위배 규정 정비(안 제13조, 제17조제2항, 제19조, 제25조제4항, 제26조, 제30조, 제33조, 제34조)

1) 조례 재기재 : 수당, 위탁시 의회동의,

2) 법령 재기재 : 권리양도의 제한, 준용, 시행규칙

3) 법령위배 : 위탁의 취소, 운영주체에게 모든 책임 전가, 업무대행

4. 입법예고기간 : 2021. 10. 23. ~ 2021. 11. 7.(20일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 11. 8.(월)

나. 제출방법 : 방문(평일 근무시간 내), 우편, 팩스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기관 :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행복농촌과

○ 주 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22 (우)50147

○ 전 화 : 055)940-8280, FAX: 055)940-8229

○ 이메일 : ecolife@korea.kr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

◇ 조 례 명 :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입법예고내용	의 건	비 고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p><u>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4조 및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거창군·함양군·합천군이 공동으로 건립한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2·3. (생략)</p> <p>4. “생산자단체”란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p> <p><신설></p> <p>제3조(명칭 및 위치) 이 시설의 명칭은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이하 “유통센터”라 한다)로 하고, 그 소재지는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1347번지 일원에 둔다.</p>	<p><u>거창군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함양군·합천군이 공동으로 건립한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1·2. (현행과 같음)</p> <p>4. “생산자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4호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p> <p>제2조의2(거점산지유통센터의 설치)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제1항에 따라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이하 “유통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p> <p>제3조(위치) 유통센터는 거창군 거창읍 거합대로 3372 일원에 둔다.</p>

현 행	개정안
<p>제5조(설치운영) ① <u>거창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에 따라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u></p> <p>② <u>제1항에 따라 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는다.</u></p> <p>③ <u>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u></p> <p>1. <u>유통센터 시설보완 및 현대화 사업</u> 2. <u>농산물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시설 지원사업</u> 3. <u>그 밖에 군수가 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u></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p>제6조(시설 설치 및 변경) <u>군수는 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u></p>	<p><삭 제></p>
<p>제8조(구성) ①·② (생략)</p> <p>③ <u>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재무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거창군·함양군·합천군의 각 유통센터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로 한다.</u></p> <p>1. <u>거창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u> 2. (생략) 3. <u>함양·합천군수가 추천하는 자(3명 이내에 한한다)</u> 4. (생략)</p>	<p>제8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재무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거창군·함양군·합천군의 각 유통센터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로 한다.</u></p> <p>1. <u>거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u> 2. (현행과 같음) 3. <u>함양·합천군수가 추천하는 사람(3명 이내에 한정한다)</u> 4.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정안
<p>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u>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u>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u>2년으로 한다.</u>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p>	<p><삭 제></p>
<p>제15조(운영위탁) ① 군수는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5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p>	<p>제15조(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유통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2. 제1호의 생산자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3. 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유통업체 4. 제1호의 생산자단체, 제2호의 법인 및 전문유통업체 등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5. 유통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제1호 및 제3호의 자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p>② 위탁 기간 및 갱신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다.</p>
<p>② 제1항에 따라 유통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주체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 만료 2개월 전에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갱신할 수 있다.</p> <p>③ 유통센터의 위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p>	<p>③ 그 밖에 위탁협약, 위탁료 산정 등은 「공유재산법」 제94조의2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현 행	개정안
<p><u>제17조(운영주체 선정) ①</u> 군수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위탁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농산물의 수집·판매능력, 투자계획, 자금조달계획, 경영계획, 인력확보 및 농산물유통에 대한 경험 등을 기준으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운영주체를 선정하여야 한다.</p> <p><u>②</u>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운영주체를 선정하려는 때에는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거창군의회 <u>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u></p> <p><u>제19조(위탁의 취소 등) ①</u> 군수는 운영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제15조제3항에 따른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u> <u>2.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u> <u>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유통센터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u> <u>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이 곤란한 경우</u> <p><u>②</u>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u>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u></p> <p><u>③</u>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한 경우 운영주체가 입은 피해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p>	<p><u>제17조(운영주체 선정)</u> 군수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위탁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농산물의 수집·판매능력, 투자계획, 자금조달계획, 경영계획, 인력확보 및 농산물유통에 대한 경험 등을 기준으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운영주체를 선정하여야 한다.</p> <p><u><삭 제></u></p> <p><u><삭 제></u></p>
<p><u>제20조(이용료) ①</u> 군수는 유통센터의 시설물 및 장비의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u>충당하기 위하여 운영주체로부터 해당연도 매출액의 1천분의 5 범위 안에서 이용료를 징수</u></p>	<p><u>제20조(이용료) ①</u> 군수는 제15조에 따라 위탁한 경우 <u>법 제5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따라 시설물 및 장비의 이용료를 운영주체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u></p>

현 행	개정안
<p>하되, 매년 유통센터의 운영실적에 따라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p>	<p>는 유통센터의 운영 실적에 따라 이 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p>
<p>② (생 략)</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5조(운영주체의 의무 및 책임)</p>	<p>제25조(운영주체의 의무 및 책임)</p>
<p>①·②·③ (생 략)</p>	<p>①·②·③ (현행과 같음)</p>
<p>④ 운영주체는 유통센터를 관리·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p>	<p><삭 제></p>
<p>제26조(권리양도의 제한) 운영주체는 군수의 승인 없이 위탁받은 재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p>	<p><삭 제></p>
<p>제30조(업무대행) 군수는 운영주체가 제19조 및 제29조에 따른 행정처분이 나 휴·폐업 등으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다른 운영주체를 선정하여 그 위탁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삭 제></p>
<p>제5장 보칙</p>	<p><삭 제></p>
<p>제3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유통센터의 위탁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등을 준용한다.</p>	<p><삭 제></p>
<p>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삭 제></p>

공 시 송 달 공 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공유재산의 보호)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영장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자의 주소불명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0일

거 창 군 수

1. 공 고 명 : 군유임야 내 무단점유 건축물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 10. 20. ~ 2021. 11. 16.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공유재산의 보호), 같은법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제15조
5.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위 치	철거대상			대집행 방법	원상복구 명령 대상자		공시송달 사유
	물건종류	수량	면적		이름	주소	
가북면 용산리 377	정미소	1	123.2	원상복구 및 철거	변*섭	경상남도 거창군	폐문부재 반송
	창고	1	44.7	원상복구 및 철거			
	축사	1	24	원상복구 및 철거			

6. 기타사항

가.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거창군청에서 대집행하고자 합니다.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문의사항 : 거창군청 산림과(☎055-940-34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021-2호

행정대집행 영장

성명(단체명) 변○섭 귀하

주소: 경남 거창군

2021년 05월 10일 산림과-9669(2021.5.10.), 2021년 06월 09일 제2021-854호로 귀하 소유의 불법 건축물을 2021년 06월 30일까지 철거 및 원상복구 하도록 계고서를 송달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우리 거창군에서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대집행 일시	행정대집행 책임자			행정대집행 비용(추산액)
	소속	직위(직급)	성명	
2021년 11월 16일 오전 10시	산림과	산림과장 (녹지5급)	강신여	건설폐기물처리비용 5백만원 건축물철거비용 5백만원 석면처리비용 14백만원

2021년 10월 12일

거창군수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및 제8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63조 및 제77조의2,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및 같은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정기 검사 안내문, 부과지서, 자동차 검사명령서, 건설기계 정비명령서, 건설기계검사지시 최고 통지, 압류통지서 등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주소불명, 이사감,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검사유효기간 경과 차량은 빠른 시일 내에 가까운 자동차검사소 또는 지정 정비사업소에서 자동차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정기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 규정에 의거 최고 30만원의 과태료,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최고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계속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번호판 영치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1항에 의거 직권말소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오니 빠른 시일 내에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 자동차·건설기계 검사안내 및 위반자 우편통지서 반송분 공시 송달
2. 공고기간 : 2021. 10. 20. ~ 2021. 11. 8.
3. 공고대상 : 48건(붙임내역 참조)
4. 문 의 처 : 거창군청 민원소통과 민원담당 (☎055-940-3293)

2021년 10월 20일

거 창 군 수